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대상 및 통보기한(제17조제1항 관련)

통보대상	통보기한
1. 수주활동	
가. 수주활동 현황	1) 도급공사: 입찰예정일 10일 전까지 2) 도급공사 외의 공사: 공사의 시행개시일 20일 전까지
나. 계약 체결 결과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다. 해외공사 실적	매년 2월 15일까지
2. 시공	
가. 시공 경과	매년 7월 31일까지
나. 준공 결과	준공일부터 30일 이내
다. 공사내용 변경	공사내용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라. 해외공사에 따른 각종 사고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비고

1. 위 표 제1호다목에서 "해외공사 실적"이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공사 실적을 말한다.
2. 위 표 제2호가목에서 "시공 경과"란 실제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전년도 7월 1일부터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시공 경과를 말한다.
3. 타당성조사·설계 및 조달 활동은 위 표 제1호가목의 수주활동 현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시공 경과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계약서 또는 발주공고에 따른 공사기간이 15일 이내인 공사는 위 표 제1호가목의 수주활동 현황 통보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는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준공 결과 통보를 할 때 함께 할 수 있다.
5. 「대외무역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은 위 표 제1호의 수주활동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되, 같은 표 제2호의 시공 통보대상에는 포함한다.